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62
----------	-----

2024. 9.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8월 2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라. 상정일자: 2024년 9월 4일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성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학령인구 포함)와 지방소멸 위기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교육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주요 정책들의 근간이 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소통, 상호 지원 노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충북교육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충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의 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에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안전한 교육환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제12호~제14호)
- 매년 8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 하도록 함 (안 제7조)
-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함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⁹⁾와 지역소멸 위기¹⁰⁾의 현실화 우려 속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현 기조에 따라 ‘교육특구·지역활성화를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늘봄·학교시설 복합화·온마을 배움터 정책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업을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이 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과 정기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9)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 2021년 0.81명 → 2022년 0.78명 → 2023년 0.72명

10) 소멸고위험 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소멸위험 지역: 음성, 증평, 충주, 제천

소멸주의 지역: 청주, 진천

(2024년 6월 기준 통계청 자료)

나. 주요내용 검토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간 협의·조정 사항에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지역소멸위기 대응, 안전한 교육환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신설하여, 협의회가 시대변화·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민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는 제2조의 개정 사항과 같이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감에 따라 현행 매년 8월 중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회 정기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하도록 강화하여 협의회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2021~2024 현재)

년도	회차	일자	비고
2021	제1차 교육행정협의회	2021. 4. 12.	2회 개최
	제2차 교육행정협의회	2021. 10. 28.	
2022	제1차 교육행정협의회	2022. 5. 26.	"
	제2차 교육행정협의회	2022. 11. 4.	
2023	제1차 교육행정협의회	2023. 4. 5.	"
	제2차 교육행정협의회	2023. 11. 10.	
2024	제1차 교육행정협의회	2024. 4. 11.	안건 발굴 및 도청과 협의 후 추진 예정
	제2차 교육행정협의회		

- 안 제10조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음.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건 관련 실무부서와의 의견조정 및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협의회 심의 안건을 채택하여 상정하는 등 협의회 개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개정 사항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

**타 시·도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기준**

(2024. 8. 기준)

구분	조례명	회의 운영 횟수		실무협의회		비고
		정기회	임시회	임의	강제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필요시		○	
경기	경기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1	“		○	
인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2	“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	○		
세종	세종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1	“		○	
충남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	○		
대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	○		
광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1	“	○		
전남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		○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	○		
경북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1	“	○		
경남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1	“	○		
울산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1	“	○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2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1	“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늘고 있어 이 같은 시대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 확대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협의회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협의회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 다만, 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회 개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실무협의회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실무협의회의 세부 구성 체계와 회의 개최, 협의회 심의 안건 선정 및 처리 방법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양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학령인구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1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8월 중”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로 한다.

제9조 중 “도청의”를 “도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 심의”를 “정기회 및 임시회 안전 심의”로,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부서 및 안전 제출 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 11.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12. (생략)</p> <p>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u>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7조(회의 등) ① (생략)</p> <p>② <u>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 개최를 원칙으</u></p>	<p>제2조(기능) -----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학령인구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u></p> <p><u>13.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u></p> <p><u>1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p> <p>15. (현행 제12호와 같음)</p> <p>제4조(임기) ① ----- ----- -- <u>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u></p>

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생략)

제9조(간사)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안전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전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

----- 도의 -----
-----.

제10조(실무협의회) ① ----- 정기회 및 임시회 안전 심의-----

-----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부서 및 안전 제출 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청 간 기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 사항을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의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